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사 무 편 랐

2023. 3.



서 식

제1장 총칙	2
제2장 추진체계	3
제3장 사업추진절차	5
제4장 모집공고	6
제5장 선정	8
제6장 협약	10
제7장 지원금의 관리 및 집행	11
제8장 보고(점검) 및 평가	19
제9장 조기 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20
제10장 지원금 정산 및 제재·환수	21
제11장 행정사항	23
<별표>	25
<서식 >	29

재도전 사업자지원 사업 사무편람

[2023.3.20.,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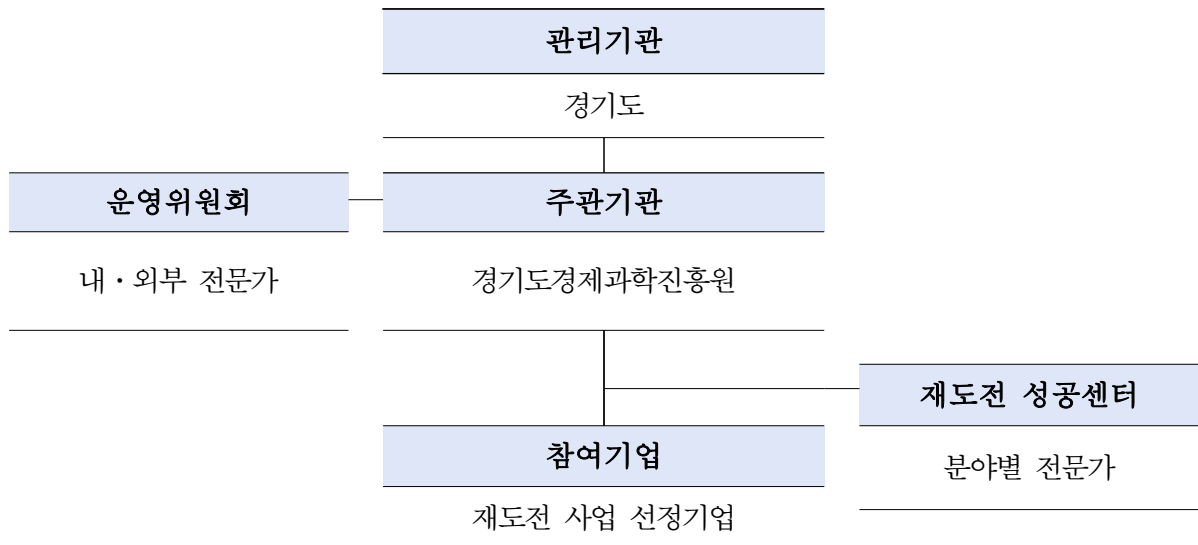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도전 사업자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이라 함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경기도내에서 재창업을 하는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소재 3년 이내 재창업)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경기도내에 성공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예산의 수립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말한다.
4. “운영위원회”라 함은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평가와 참여기업의 중단 및 실패 판정, 지원금의 환수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사업을 신청한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6. “참여기업”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 7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 중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예비선정자”라 함은 참여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심사점수 순위에 따라 참여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자로서 주관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운영위원회”란 평가 및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전문가”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3조(관리기관) 경기도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달 및 예산수립, 총괄 지도·감독
2. 사업계획서 심의 검토

제4조(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주관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관련 세부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2. 사업 협약체결
3. 사업 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4. 선정자의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5. 선정 및 평가 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장의 요청사항 대응

제5조(참여기업) 사업에 선정된 (예비)재창업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표의 달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2. 관련법률, 사업공고,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3.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4.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사업장을 등록
5. 참여기업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최소 6개월 경기도내 사업장 유지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점검 및 평가, 지원사업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 기관 관련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다.

1. 참여기업 선정확정
2. 참여기업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3. 참여기업에 대한 완료평가
4.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도전 성공센터) 재도전 성공센터는 본 사업 지원대상 기업 및 경기도 내 (예비)재창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1. 재도전 성공센터는 (예비)재창업기업의 기업애로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상담 및 심층컨설팅을 지원한다.
2. 일반상담은 성공센터에서 상담 전문위원이 상주하여 일반적인 기업애로상담을 지원하며 다음단계인 전문가 상담과 심층컨설팅을 연계한다.
3. 상담분야는 경영, 자금/금융, 인사/노무, 특허/인증, 세무/회계, 회생/법률 6개 분야이다.
4. 전문가 상담 후 기업진단에 따라 심층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5.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컨설팅은 산·학·연 협의체 POOL을 활용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한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세부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사업추진절차

구분	단계	주요내용	수행주체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공고 및 홍보	주관기관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재창업기업 평가·선정	·적격확인 → 성실경영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주관기관
	협약체결	·주관기관-재창업기업 2자간 협약	주관기관, 재창업기업
	참여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금 지급/역량강화프로그램	주관기관, 참여기업
	평가 및 정산	·중간점검 / 완료평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상담기업 모집·접수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공고 및 홍보 ·상담신청서 제출	주관기관
	일반상담	·재도전 성공센터 상주 전문위원 일반상담 지원	주관기관
	전문가 상담	·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평가 및 보고	·전문상담 및 컨설팅 결과보고 ·만족도 및 평가	주관기관

제 4 장 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① 주관기관은 본 사업 재창업기업 모집계획을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광고 등 통해 공고한다.

②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재창업 3년 미만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표-1 신청자격 >

지원 구분	신청자격
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초기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기준 사업개시일이 경기도내 3년 미만 재창업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개인/법인 대표자)

* 재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② 초기재창업자는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된 자에 한한다.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제10조(지원제외 대상)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휴업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6.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표-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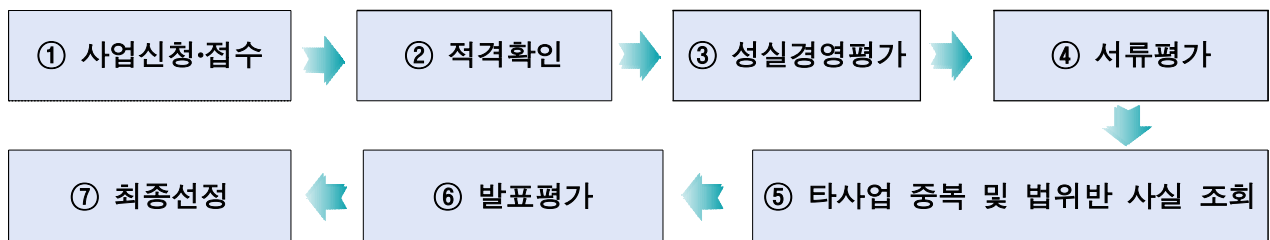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 5 장 선 정

제11조(선정절차) ① 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3>와 같이 선정평가를 수행한다.

< 표-3 선정평가 절차 >



②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③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적격확인) ① 주관기관은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제외대상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검토하고, 부적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성실경영평가 대상으로 상정한다.

제13조(성실경영평가) ① 신청자의 재창업 전 폐업기업의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 평가를 위하여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및 44조

② 주관기관은 성실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대상자로 상정한다.

제14조(서류평가) ① 주관기관은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류평가표[제5-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류평가한다.

②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이 5명이상인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는 산술평균 한다.

③ 평점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고득점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④ 동점자 발생 시 실현가능성→성장전략→문제인식 평가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제15조(발표평가) ① 주관기관은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표평가표[제5-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는 산술평균 한다.

③ 평균 60점 이상자에 대해 고득 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동점자 발생 시 실현가능성→성장전략→문제인식 평가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⑤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에 상정된 과제는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와 법위반 사실여부에 대해 조회하여 그 결과를 발표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제16조(예비선정자) ① 발표평과 결고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예비선정자 순위를 부여한다.

② 협약 미체결 및 중도 이탈자로 선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등 지원대상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예비선정자를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전환한다.

③ 예비선정자가 없을 경우, 추가모집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협 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선정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한다.

③ 예비선정자가 지원대상으로 전환되어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년도 동일 차수 참여기업의 협약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주관기관장은 재창업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 선정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⑤ 재창업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우선순위의 예비선정자를 지원대상으로 통보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등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은 변경사유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 등이 기재된 협약변경승인요청서 및 변경된 과제에 대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주관기관은 산업동향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동종·유사 산업내에서 참여기업이 제출한 협약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협약변경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거나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③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한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수행을 자진 포기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제6-2호 서식]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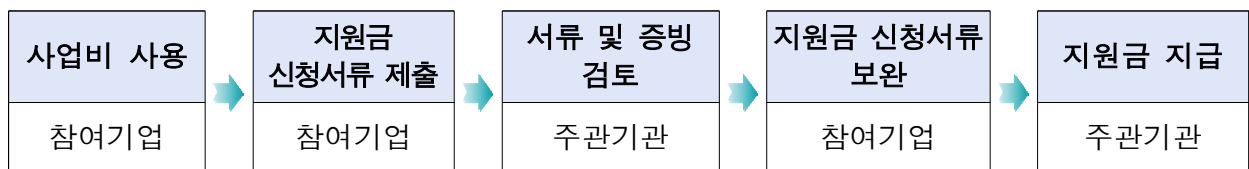
③ 협약의 해약 사유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원금의 관리 및 집행

제2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은 협약기간내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항목별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② 참여기업은 지원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사업비용을 모두 집행(총금액 완납)하고,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시점에 지원금액(공급가액 90%)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200만원(지원금 기준) 이상의 외주용역의 경우, 업체지급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4 지원금 지급 절차>



③ 참여기업은 사업비 집행에 사용할 계좌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1. 개인 : 창업자(대표자) 명의 계좌
2. 법인 : 법인명의 계좌

제21조(지원금 집행원칙) ① 참여기업은 외주용역 업체 선정 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체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참여기업 본인, 창업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

1.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2.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4. 참여기업이 채용한 임직원(임원, 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③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 자 입력란에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기재하고, 기 창업자는 창업자 회사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2. 카드 사용 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카드를 사용한다.

④ 해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외화송금증 및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및 세금은 지원 제외)으로 정산한다.

⑤ 주관기관은 부가세 및 관세(송금시 수수료포함)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외한다.

* 주관기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⑥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한다.

⑦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제22조(지원금 비목 정의 및 내용)** ① 참여기업은 지원금 항목별 집행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클라우드펀딩 등록지원의 사업비 비목은 <표-5>와 같이 구성한다.

<표-5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비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공통	• 비교견적서 :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필수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외주용역비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외주용역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1인 월 3백만원 한도내 집행
	•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근무상황부, 입금확인증(송금증)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관련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입금확인증,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우선심사 영수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해당시)
광고선전비	참여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단, 홈페이지 제작은 3백만원 한도내 사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광고내역 및 결과보고서(증빙사진, 기간별 소진내역 등 포함), 홍보제작물 등 • 외주용역시 : 견적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검수조서 추가
사무실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임차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기자재 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시험·인증서
세무회계기장비	참여기업이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2백만원 한도내 집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회계감사보고서(해당시)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참가비 등 집행항목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참가확인서 등 포함)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시험·인증서
멘토링비	참여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2백만원 내, 자부담없음)
	멘토링 계획서, 멘토 이력서, 멘토 신분증,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통장사본
교육훈련비	참여기업 직원이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 참가 신청서, 교육 자료,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이 교육받을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제23조(재료비) ①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구매 불가하다.

제24조(외주용역비) ①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
4. 참여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③ 외주용역 시 참여기업은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2천만원(공급가액) 이상 건은 2인이상으로부터 비교견적서를 받아 제출한다.

④ 외주용역비는 최종 결과물 검수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⑦ 시제품의 시금형은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이 불가하다.

제25조(인건비) ① 참여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참여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할 수 없다.(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④ 사업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참여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참여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 ⑦ 참여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 표-6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

구 분	내 용			비 고
인건비 지급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단, 신규 채용 직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하단의 역량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역량 기준	■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3,869천원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창업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4,668천원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별 / 규모별('22년 기준)	기준 초과지급 희망 시 관련증빙 (학위증명 또는 포트폴리오 등)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제26조(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① 창업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협약일 이후 등록·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등록비용에 대하여 집행 가능하다.

③ 출원(등록)인은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제27조(광고선전비)** ① 참여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32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 ③ 기업홍보용 신규 홈페이지 제작만 가능하며(리뉴얼 및 수선유지 불가), 최대 300만원(지원금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시제품 자체가 앱이나 플랫폼(홈페이지)개발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
- ⑤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 판촉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다.

제28조(사무실 임차료) ①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내 위치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하다.

1.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2.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무공간 및 아이템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의 임대료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②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에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단, 비즈니스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의 공유 사무공간인 경우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시 집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전대차 계약’은 집행이 불가하다.

제29조(기자재 임차비) 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서버 등 1개월 이상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하다.
2.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0조(세무회계기장비) ① 참여기업이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대행료를 지원한다.(지원금 기준 최대 2백만원 내)

② 회계기장비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1조(전시회 참가비) ① 제품 홍보를 위해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숙박비, 여비, 교통비, 식비 등 체제비용과 전시회 참관을 위한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②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 시 중복 지원 불가하다.

제32조(시험·인증비) ①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 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제33조(멘토링비) ① 참여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00만원 내/자부담 없음)

② “멘토링비”는 1일 2시간 이상 20만원 한도로 10회까지 가능하며, 협약기간 중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멘토링비”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세금신고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멘토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이 시장 및 기술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34조(교육훈련비)** ① 참여기업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 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 ③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참여기업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고(점검) 및 평가

- 제35조(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기간중 시제품 제작 현황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2인 이상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점검반은 주관기관 소속인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참여기업의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 ③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점검안내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중간보고서 [제5-3호 서식]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주관기관은 점검시, 사업진척도 미흡 및 허위·제재 등 문제가 확인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현장을 동행하여 재점검하거나, 운영위원회 실시하여 사업비 제재 및 환수할 수 있다.

- 제36조(성과평가)**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실시한다.
- ② 평가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실패’할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실실패’ 여부 및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평가항목
1.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 여부
 2. 지원금 집행실적
 3. 추진성과(매출, 고용창출, 편당실적, 후속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등)

제 9 장 초기 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제37조(초기 지원종료) ① 참여기업이 초기 지원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항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할 수 있다.

1. 초기 지원종료를 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이행 및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경우
 3. 배정된 지원금의 90% 이상을 집행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 ② 참여기업은 초기 지원종료를 승인 받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38조(사후관리)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종료 후 (지원종료 후 5년 이내)에도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간담회
 2. 교육 및 네트워킹
 3. 지원기업 실태조사(사업체 운영현황, 매출 및 고용현황 등 변동사항)
- ② 참여기업은 협약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원금 정산 및 제재 · 환수

제39조(사업화자금 정산)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 후 지정회계법인이 발한 사업비의 회계감사보고서, 지원금 집행증빙,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점검반을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등의 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제재 및 환수)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성과평가 실패 판정 등으로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기업지원 운영규정」 및 동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사유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항력성 등을 근거로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지원금 지급중단, 창업자의 제재등급 및 참여제한 범위, 지원금 환수를 결정하며 주관기관 및 경기도가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임의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제재하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2.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3. 5년간 또는 영구히 주관기관 지원대상에서 배제

④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제출한 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할 시)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제재 및 환수 기준) 제재 및 환수의 기준은 <표-7>와 같이 구성한다.

< 표-7 제재 및 환수 기준 >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참여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

제 11 장 행정사항

제42조(정보제공동의) ①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2. 법위반 조회를 위한 동의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동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43조(민원해결)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 한다.

제44조(기타사항) 이 사무편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별표 · 서식

별표

【별표1】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별표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별표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 ⑨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⑩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별표 2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0.21. 규정 제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서식

1. 사업 신청서류

- 【제1-1호】 [예비]재창업자 사업계획서
-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1-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1-4호】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1-5호】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 【제1-6호】 이익 및 구제 신청서 [해당시]
- 【제1-7호】 [예비]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

2. 협약 서류

- 【제2-1호】 협약서
- 【제2-2호】 사업장 유지 동의 약약서
- 【제2-3호】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 【제2-4호】 청렴 서약서

3. 지원금 신청서류

- 【제3-1호】 지원금 신청서
- 【제3-2호】 급여대장
- 【제3-3호】 근무상황부
- 【제3-4호】 멘토링 보고서
- 【제3-5호】 멘토 이력서

4. 보고서

- 【제4-1호】 중간 보고서
- 【제4-2호】 완료 보고서
- 【제4-3호】 협약변경 신청서

5. 평가표

- 【제5-1호】 서류평가표
- 【제5-2호】 발표평가표
- 【제5-3호】 중간점검표
- 【제5-4호】 완료평가표
- 【제5-5호】 협약변경 승인 검토서

6. 기타

- 【제6-1호】 조기졸업 신청서
- 【제6-2호】 사업포기 신청서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예비]재창업자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	세부항목
일반현황	· 대표자, 제품·서비스(아이템)명 등 일반현황 개요 작성
폐업기업 세부내용	· 이전에 운영하다 폐업한 모든 폐업기업에 대한 내용 작성
제품·서비스 개요 (요약)	· 재창업 제품·서비스(아이템) 소개, 차별성, 국내·외 목표시장, 재창업제품(서비스)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

문제인식 (Problem)	1-1. 폐업(실패) 원인 분석 - 폐업기업 사업개요 - 폐업(실패) 원인 분석 (외적, 내적 요인)
	1-2.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재창업 배경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필요성 - 목표시장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실행 가능성 (Solution)	2-1.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 재창업 아이템의 현재 구현정도 -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세부내용
	2-2.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 대응전략
	2-3.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 아이템의 차별성·기술성
성장 가능성 (Scale-up)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추가자금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시장 확보방안 / 진출실적 - 해외시장 진출방안 / 진출실적 / 진출역량
	3-3.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 - 사업 전체 로드맵 - 추진일정에 따른 전략 및 사업화 방안
팀 구성 (Team)	4-1. 재창업자의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내부 역량) - 조직구성 현황(계획) - 대표자의 역량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팀원 현황 및 역량 / 해외시장 분야 핵심인력 현황 / 추가인력 고용계획 - 인프라 구축 현황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인프라 종합 도식화
	4-2. 외부 역량 확보계획 (외부 역량)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보유현황 및 역량 - 네트워크 현황

【제1-1호 서식】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예비]재창업자 사업계획서

※ 본문 15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 최초 설립한 사업자 기준

제품(서비스)명							
신청자(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 여	
기업명		(주)○○○○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세부 주소		사업자등록증 기준,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자 구분 (해당항목 ☒)	☐ 예비 ☐ 개인 ☐ 법인		
기술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의료·생명	에너지·자원	화공·섬유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사업비 구성계획 (원)	도 지원금	00,000,000원 (총 사업비의 90% 이하)					
	대응 자금	0,000,000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합계	00,000,000원					
폐업기업 수 (모든 폐업기업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직접기재
		☐	☐	☐	☐	☐	개
팀 구성 (대표자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1	대표이사	○○○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동대표
2	과장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팀원
...							
...							

□ 폐업기업 세부내용

- 이전에 운영하다 폐업한 기업에 대한 폐업원인 및 사유 등 세부내용을 작성
* 폐업기업이 다수일 경우 모든 폐업기업별로 내용(표 추가) 작성

기업명	○○○○	사업장 소재지	○○도 ○○시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기업 구분	개인 / 법인
운영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제품·서비스명 (아이템)			
기술분야	정보·통신, 기계·소재		
폐업 원인 및 사유	·이전 기업에 대한 폐업 원인 및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		

기업명	○○○○	사업장 소재지	○○도 ○○시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기업 구분	개인 / 법인
운영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제품·서비스명 (아이템)			
기술분야	정보·통신, 기계·소재		
폐업 원인 및 사유	·이전 기업에 대한 폐업 원인 및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		

기업명	○○○○	사업장 소재지	○○도 ○○시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기업 구분	개인 / 법인
운영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제품·서비스명 (아이템)			
기술분야	정보·통신, 기계·소재		
폐업 원인 및 사유	·이전 기업에 대한 폐업 원인 및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		

□ 제품·서비스 개요 (요약)

제품·서비스 (아이템) 소개	· 제품·서비스(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도록 하되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제품·서비스 차별성	· 비교(경쟁)군에 있는 제품·서비스 대비 본인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차별성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제품·서비스(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1. 문제인식 (Problem)

작성항목

- 1-1. 폐업(실패) 원인 분석
 - 폐업기업 사업개요
 - 폐업(실패) 원인 분석 (외적, 내적 요인)
- 1-2.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재창업 배경
 -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 목표시장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 1-1. 폐업(실패) 원인 분석 >

- 폐업(실패) 원인 분석을 위해 과거 운영했던 폐업기업의 사업개요, 폐업기업별 폐업(실패) 원인 분석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
 - * 폐업기업 사업개요, 폐업(실패) 원인 분석 작성
 - ** 폐업기업이 다수일 경우 모든 폐업기업별로 내용 작성

☐ 폐업기업 사업개요

- 폐업한 이전 사업의 사업모델 등 폐업기업 사업개요 작성

○

-

☐ 폐업(실패) 원인 분석 (외적, 내적 요인)

- 폐업(실패) 원인(시장성, 사업성 및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한 세부 분석내용 기재
- 국내·외 시장의 변화, 법적규제, 환경변화 등 폐업의 계기가 된 **외적 요인**과 재창업자(팀원)의 역량에 대한 경험, 기회 포착, 비전 등 폐업의 계기가 된 **내적 요인** 분석 기재

○

-

< 1-2.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 “1-1. 폐업(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재창업 배경 및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작성

☐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 “1-1. 폐업(실패) 원인 분석”의 외적, 내적 요인에 대해 같은 실패 원인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개선방안, 해결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재창업(또는 준비)하는 사업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개선방안 작성

○

-

☐ 재창업 배경

- 재창업 동기와 재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기재

○

-

<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

- 제품·서비스(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필요성 기재
- 시장(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정도(분석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필요성

- 재창업을 통해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아이템)에 대한 개발동기, 개발목적과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기재

○

-

☐ 목표시장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 제품·서비스(아이템)에 대한 고객 니즈 등 목표시장 분석내용 기재
- 고객 니즈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혁신적 해결방법 등 기재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작성항목	2-1.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 재창업 아이템의 현재 구현정도 -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세부내용 2-2.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 대응전략 2-3.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 아이템의 차별성·기술성
------	--

< 2-1.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

- “1. 문제인식 (Problem)”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재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방안을 상세히 작성
- 아이템의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을 작성

☐ 재창업 아이템의 현재 구현정도

○

-

< 재창업 아이템 현재 구현정도 >

사진(이미지) 등 첨부

□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세부내용

- “재창업 아이템의 현재 구현정도” 등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세부내용,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시장 필요성 및 분석결과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어떻게 개발 또는 보완·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작성

○

-

< 2-2.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

- 시장(고객)이 요구하는 사항(필요성, 경쟁제품·서비스 비교 등)에 대한 대응전략 및 실현방법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작성

□ 대응전략

- “1-3. 항목” 및 시장(고객)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에 대하여
 1. 재창업 아이템의 **핵심 기능, 성능, 디자인** 등을 상세히 분석, 작성하고,
 2. 현재 대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개발(개선)하여 시장(고객)의 요구를 아이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고객) 대응전략**을 상세히 작성

○

-

< 2-3.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

- 강력한 경쟁자(또는 시장 경쟁자), 대비 재창업 아이템의 경쟁우위 요소에 대한 확보방안, 기술력에 따른 기술혁신성 등에 대하여 작성

□ 아이템의 차별성 · 기술성

- 경쟁사(또는 제품) 대비 재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분석 / 기재하고, 재창업 아이템의 경쟁우위 요소 등에 대한 확보방안,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 1. 재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연구 전담인력·부서·시설 등 보유, 현황 기재
2. 기술·보호 방안에 대한 자구적 계획 등(유출방지,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

-

3. 성장가능성 [Scale-up]

작성항목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추가자금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시장 확보방안, 진출실적 - 해외시장 진출방안, 진출실적, 진출역량, 수출분야 핵심인력 현황
	3-3.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 - 사업 전체 로드맵 - 추진일정에 따른 전략 및 사업화 방안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사용계획, 사업비 세부내역 등을 작성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사용계획, 사업비 세부내역 등을 작성
 * 「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

-

< 사업비 세부내역 (정부지원금 + 대응자금) >

(단위 : 원)

비목	산출근거	총사업비(100%)		
		정부지원금 (75% 이하)	대응자금	
			현금(5% 이상)	현물(20% 이하)
재료비	· DMD소켓 구입 (00개×0000원)	59,500,000		
외주 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 (000제품 플라스틱금형제작)	31,500,000		
지급 수수료	· 국내 000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30,000,000		
인건비	·	29,000,000		
...	·			
합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하, 대응자금(현금)은 5% 이상, 대응자금(현물)은 20% 이하로 작성

☐ 추가자금 조달계획

- 투자유치, R&D 등 타 부처 사업 참여 등 추가자금 조달계획 기재

○

-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목표시장(내수시장, 해외시장 등) 확보방안과 비즈니스모델(BM) 등을 통한 성과창출 전략에 대하여 작성

☐ 내수시장 확보방안 (경쟁 및 판매 가능성)

-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깃시장, 진출시기, 판매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내수시장 진출실적 ※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18.0.0.~2018.0.0.		000백만원
...			

☐ 해외시장 진출방안 (경쟁 및 판매 가능성)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깃시장, 진출시기, 판매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해외시장 진출실적 ※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품목명
0개국	000백만원		000, 000, 000

☐ **해외시장 진출역량** ※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0건	00건	00건
...		

< 3-3.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 >

- 사업 전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 (추진일정·내용별)
- 사업 전체 로드맵(추진일정)에 따른 사업화 방안 전략을 상세히 작성

☐ **사업 전체 로드맵**

-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기간('23. 4월 ~ 12월, 예정)을 기준으로 사업 전체 로드맵 작성

○

-

< 사업 추진 일정 >

구분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제품보완	000 기능 보완	2023.00.00. ~ 2023.00.00.
신제품 출시	000 출시	2023.00.00. ~ 2023.00.00.
박람회 참가	000 박람회 000 참가	
홍보영상 제작	000 홍보영상 00편 제작	
...		

☐ **추진일정에 따른 전략 및 사업화 방안**

○

-

4. 팀 구성 [Team]

작성항목

4-1. 재창업자의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내부 역량)

- 조직구성 현황(계획), 대표자의 역량,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팀원 현황 및 역량, 인프라 구축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4-2. 외부 역량 확보계획 (외부 역량)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보유현황 및 역량, 네트워킹 현황

< 4-1. 재창업자의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내부 역량) >

- 재창업자 기업(팀)에 대한 조직구성 현황(또는 계획), 대표자 및 팀원 역량, 경험, 인프라 구성현황, 향후 고용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

☐ 조직구성 현황(계획)

- 재창업자 기업(팀)에 대한 조직구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작성

○

-

조직구성 현황(계획)				
대표자 성명				
본 부 직위, 성명, 전문분야 및 역할	본 부 직위, 성명, 전문분야 및 역할	본 부 직위, 성명, 전문분야 및 역할	본 부 직위, 성명, 전문분야 및 역할	
* 조직도 세부내용은 재창업자 현황에 맞게 수정·작성 및 별도 사진(이미지) 등 첨부 가능				

☐ 대표자의 역량

- 재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재창업자의 이력, 역량, 사업화 경험, 마케팅, 주요실적 등을 기재

○

-

< 대표자의 역량 세부내용 >

대표자 성명			
경력 사항	근무기관명	직위	학력 사항
창업 이력	기업명		운영 기간
자격 및 포상			
기타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예비 재창업자는 '현재 재직인원' 작성 생략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세부내용 >

현재 재직인원 (대표자 제외)	명	추가 고용계획 (협약기간 내)	명
---------------------	---	---------------------	---

☐ **팀원 현황 및 역량** ※ 예비 재창업자는 현 팀원 현황 및 역량을 기재

- 사업 추진에 따라 재창업 아이템과 관련 있는 핵심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충원 계획, 팀원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
- 핵심팀원의 사업화 경험, 주요 실적(역량) 등 기재

○

-

< (전체) 팀원 현황 세부내용 >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일정
1	과장	OOO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00. 5.
2	...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OO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 **해외시장 분야 핵심인력 현황** : 00명

- 수출인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수출분야 핵심인력 : 임직원 중 수출 또는 무역관련 회사 경력자, 임직원 중 1년 이상 해외근무 경험자, 임직원 중 해외학위(학사 이상) 보유자 등
- 팀원 현황 및 역량에서 '해외시장 분야 핵심인력'들에 대하여 기재

성명	직급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홍길동	과장	영어권 수출	• OO무역회사 경력 3년 • ... • ... • ...
...			•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 2년 근무 • ... • ... • ...
			• • • •

○ 추가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일정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00. 5.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채용 예정

□ 인프라 구축 현황

• 재창업 아이템 개발, 개선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보유) 현황에 대하여 작성

○

-

< 인프라 구축 현황 세부내용 >

순번	구분	세부내용
1	시설 / 장비	
2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재창업자 기업(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전체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재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

○

-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세부내용 >

순번	구분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등록권자
1	출원 / 등록		홍길동
2			

☐ 인프라 종합 도식화

인프라 종합 도식화 (내·외부)

< 4-2. 외부 역량 확보계획 (외부 역량) >

- 재창업자 기업(팀)이 보유하지 않은 자원(인프라, 인적, 물적)에 대한 조달, 확보계획 및 네트워킹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보유현황 및 역량

- 재창업 아이템 개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보유현황 및 주요 역량, 협력사항 등 기재

○

-

< 업무파트너 세부내용 >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OO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20. 12.
2	...			협력 예정

☐ 네트워킹 현황

- 사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재창업자가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현황 및 주요 협력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은 「2023년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년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개인 채무 불이행여부 등
- [신용정보 조회]
주관기관(경과원)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경기도 보조금 지급 전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소속, 팩스, 직위, 역할구분((공동,각자)대표자 정보 입력 시 포함, 팀원정보 입력시 미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2023년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주관기관,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운영위원회, 교육 및 컨설팅 기관, 성공센터 전문위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경기도 및 주관기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용자 업무, 성실경영 평가, 채무조정 등 위탁
 -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업무 위탁
 - 창업지원프로그램, 성공센터 운영 등 기타 사업운영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식별정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소속, 팩스, 직위, 역할구분((공동, 각자)대표자 정보 입력 시 포함, 팀원정보 입력시 미포함))
 - 기업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조직현황, 영업 및 재무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등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경기도 및 주관기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추가사업종료 때까지) 단, 사업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2023년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1-4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5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유무(한강유역환경청)			○, X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있음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 신청기업은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법위반여부 정보공개청구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 - 기업 소재지 시군 민원실(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지정폐기물 허가업체만 해당) 법위반여부 정보공개청구(도 환경부서 불필요)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6호 서식] - 해당 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경기도 재도전사업자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평가 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7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예비]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

폐업횟수	건
------	---

순번	폐업기업명	폐업일	폐업사유
		0000.00.00	

* 폐업기업 누락, 허위기재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신청자(재창업자)에게 있음에 유의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 00. 00.

기업명 :

재 창업자 : (서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1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협약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과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참여기업

- 성명(생년월일) :
- 기업명 :

■ 사업과제명 :

■ 협약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협약금액(사업화지원금) : 금00,000,000원(금 원)

제1조(목적)

경과원과 참여기업은 상호간의 공동 협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참여기업의 의무)

- ① 참여기업은 제출 사업계획서 따라 성실히 창업 준비와 사업발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③ 예비창업자인 참여기업은 협약 만료 전 경기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참여기업은 협약기간동안 경기도 내에 사업장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참여기업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협약의 해약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원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를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참여기업은 경기도 창업플랫폼에 가입하여 기업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 ⑥ 참여기업은 특화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참여해야 한다.

제3조(사업비지원)

- ① 경과원은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과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참여기업은 위의 사업지원비로 협약기간내 아이템 개발을 위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광고선전비 등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사무편람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화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항목별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내를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공급가액의 10%이상 부담한다.

제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① 참여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사업의 중간점검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과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참여기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경과원의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서, 졸업 후 사업추진성과 작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경과원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관련자료 제출 등)

- ① 참여기업은 경과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 ① 참여기업의 협약사항(사업과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동향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동종·유사 산업 내에서 협약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경과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참여기업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협약 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하여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협약 선정된 아이템을 타 기관에서 지원 받았을 경우

마. 사업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협약기간에 다른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사업성과물의 활용)

- ①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을 검토하여야 하고, 소유권은 참여기업에게 귀속된다.
- ②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경과원과 참여기업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경기도의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경과원과 참여기업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창업지원시설의 사용)

- ① 경과원은 참여기업에게 협약기간동안 아래의 창업지원시설(회의실, 개방형 좌석, 네트워킹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창업베이스캠프)

- ②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를 ①항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협약 만료 후 6개월 이내 타 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경과원의 사정에 따라 ①항의 창업지원시설이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은 사업장 이전에 협조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경과원과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원과 참여기업은 변경된 법령과 사무편람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수원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③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경과원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124-82-0875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원 장 : (직인)

참여기업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제2-2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사업장 유지 동의 협약서

본인은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경기도 내 사업장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 년 월 일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함.

[제2-4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202

:

:

()

[제3-2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급여대장 (2023년 00월분)**

회사명		급여지급일	
-----	--	-------	--

인적사항		기본급여 및 제 수당				
사원번호	성명	기본급	상여	식대	교통비	
입사일	직급					
퇴사일	부서					지급합계
1	이순신	0	0	0	0	
20180501						
						0
2	홍길동	0	0	0	0	
20180501						
						0
합계 (00명)		0	0	0	0	0
						0

인적사항		공제 및 차인지급액					
사원번호	성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 험	장기요양보 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사일	직급	농특세	학자금상환액	산재보 험			공제합계
퇴사일	부서						차인지급액
1	이순신	0	0	0	0	0	0
20180501		0	0	0			0
							0
2	홍길동	0	0	0	0	0	0
20180501		0	0	0			0
							0
합계 (00명)		0	0	0	0	0	0
		0	0	0			0
							0

[제3-3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근무상황부**

근무월 : 202 년 00월

연번	월일	업무시간	업무내용	비고
1	00/00(수)	00:00 ~ 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자 000은 이상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근무내용 증빙자료

근로자(작성자) : 000
(주)0000 대표자 : 000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5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멘토 이력서**

사진	이름(한자)		
	생년월일(6자리)		
	전문분야	대분류	
		중/소분류	

주 소(주택)		전화번호	
소속 및 직급		E-mail	
< 학 력 사 항 >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전공학과)	학 위(졸업/수료)
< 경 력 사 항 >			
기 간	직 장 명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 자격증 >		< 저서 및 논문 >	
< 주 요 이 력 >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메인디자인 완성	40%
	2			
	⋮	⋮	⋮	⋮

○
-

세부
추진실적 및
성과

< 삭제 후 제출 >

1. 협약시작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경과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서비스)제작 진척 현황 및 사업화를 위한 주요 활동(마케팅, 지재권, 신규채용 등)에 대하여 기재

☐ 사업추진 현황

○
-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 제작현황을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시제품 사진 >

향후
추진계획

< 삭제 후 제출 >

1. 시제품(서비스) 제작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

2.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	주요 지출 계획	집행 예상액	누적 집행액	누적 집행율
'22.7월	- 시금형 제작 외주용역비 지급 - 브로슈어 제작 지급	8,000,000원	38,000,000원	70%
'22.8월	⋮	⋮	⋮	⋮
⋮				

[제4-2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완 료 보 고 서

1. 기본 정보		※ 협약기간 : '23.00.00 ~ '23.00.00		
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예정)일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창업과제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비 집행 (도지원금)	협약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 잔액 (a-b)	집행률(b/a)
	원	원	원	%

2. 주요 성과		※ 성과는 '협약개시일 ~ 협약종료일(협약기간 이내)'을 기준으로 작성 ※ 지재산, 기타 실적관련 표 추가 가능			
창업 현황	창업 여부	☐ 여 ☐ 부		현재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	☐ 여 ☐ 부		목표 대비 달성도	%
	최종 시제품 제작현황 요약	사업비로 제작한 시제품·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간략한 요약 (미완료시 미완료 사유)			
주요 성과	매출액 (협약기간 이내)	원	고용	현재	5 명
				신규채용 (협약기간 이내)	3 명
	투자유치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자금조달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지식재산 권 보유현황 (협약기간 이내)	구분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저작권 등)				
기타 실적 (협약기간 이내)	구분	세부 내용			
	인증	인증명칭 / 인증기관 / 인증일자 등			
	투자유치	투자기관 / 투자규모/ 투자유치일자 등			
	MOU	MOU 체결기관 / 체결일자 등			
	판로개척	국내외 판로확보(계약체결 등) 규모, 거래처 등			
	기타	M&A, 수상 실적 등 자유롭게 기입			

3. 세부내용

목표 대비
실적 요약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 상 주요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별 달성여부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 사업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테스트 페이지 오픈	100%
2			
3			
⋮	⋮	⋮	⋮

○

-

세부
추진실적

< 삭제 후 제출 >

1. 협약개시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경과·실적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 제작, 마케팅(홈페이지 등), 신규채용을 통한 팀원구성 등 주요 사업화 활동 별로 구분하고, 활동별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사진, 도표 등 사용 가능

☐ 사업추진 결과

○

-

시제품 사진	< 삭제 후 제출 > 1. 시제품·서비스·플랫폼 등 창업아이템 관련 산출물에 대해 사진, 스크린샷 첨부(3장 이상) 2. 사업화 활동 중 제작된 산출물(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이 있을 경우 첨부 시제품(서비스) 사진		
	사진/스크린샷 ①	사진/스크린샷 ②	사진/스크린샷 ③
	사진/스크린샷 ④	사진/스크린샷 ⑤	사진/스크린샷 ⑥
	기타 사진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기타 창업·마케팅 활동 관련)		
	사진/스크린샷 ①	사진/스크린샷 ②	사진/스크린샷 ③
	< 삭제 후 제출 > 1. 본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사업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 ○ -		
향후 추진계획			

[제4-3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대표자명		연락처	
변경요청 내 용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첨부] (변경된 아이টে에 대한) 수정사업계획서 1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1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서류 평가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문제인식 (25)	1-1. 폐업(실패)원인 분석	5	4	3	2	1	
	1-2.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5	4	3	2	1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15	12	9	6	3	
실행가능성 (30)	2-1.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개선) 방안	10	8	6	4	2	
	2-2.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10	8	6	4	2	
	2-3. 아이템의 차별성 및 기술혁신성	10	8	6	4	2	
성장전략 (25)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5	4	3	2	1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5	12	9	6	3	
	3-3.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	5	4	3	2	1	
팀 구성 (20)	4-1. 재창업자의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10	8	6	4	2	
	4-2. 외부 역량 확보계획	10	8	6	4	2	
합 계		() 점					

평 가 의 견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2 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2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발 표 평 가 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문제인식 (20)	1-1. 폐업(실패)원인 분석	5	4	3	2	1	
	1-2.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5	4	3	2	1	
	1-3.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10	8	6	4	2	
실행가능성 (40)	2-1.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개선) 방안	15	12	9	6	3	
	2-2.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10	8	6	4	2	
	2-3. 아이템의 차별성 및 기술혁신성	15	12	9	6	3	
성장전략 (30)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	8	6	4	2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	8	6	4	2	
	3-3.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	10	8	6	4	2	
팀 구성 (10)	4-1. 재창업자의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5	4	3	2	1	
	4-2. 외부 역량 확보계획	5	4	3	2	1	
합 계		() 점					

평 가 의 건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2 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3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중 간 점 검 표

기업명		기업명	
과제명			

점검항목	점검내용	적정	부적정				
1. 사업계획 이행	○ 내부 인력, 기자재의 투입 또는 외부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시제품제작 방법이 적정한가?						
	○ 시제품제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제작이 가능한가?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상의 최종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2.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방법이 적정한가?(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집행 부진 여부)						
3. 사업추진성과 * 협약일~0월 기준	매출액	백만원	고용현황	신규 고용인원 : 명			
				총 고용인원 : 명			
	타지원사업 투자현황	투자	건 수 : 건	지재권 현황	출원· 등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건 건 건 건
			총 금액 : 백만원				
		타지원 사업	계약일자:		인증		건
			건 수 : 건				
		총 금액 : 백만원					
		선정일자:					
사업진행률 ^{주1)}		%	사업비집행률 ^{주2)}		%		

4. 점검결과	☐ 계속 ☐ 보완 ☐ 중단
	<점검의견> -

점검일자	202 년 00월 00일	점검자	
점검장소			

주①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주2) 집행사업비/총사업비*100

[제5-4호 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완 료 평 가 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1. 사업목 표달성	경기도 내 창업(유지)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창업	☐ 미창업
			☐ 휴업	☐ 폐업
	시제품제작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 대비 제작 완료여부	☐ 완료	☐ 실패
2. 추진성과	지적재산권 출원/인증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상표 : 건, 디자인 : 건, 인증서 : 건		
	투자 성과	☐ 투자건수 및 금액 (건, 투자금액 : 백만원)		
	용자 성과	☐ 용자건수 및 금액 (건, 용자금액 : 백만원)		
	타 지원사업 선정 성과	☐ 선정건수 및 금 액(선정건수 : 건, 지원금액 : 백만원)		
	매출, 고용 성과	☐ 매출 실현 (매출액 : 백만원)	☐ 고용 창출 (총 : 명 / 신규 : 명)	
3.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4. 종합의견				

202 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완료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5호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검토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변경 전		변경 후	
검 토 의 건			
검 토 결 과	☐ 변경 승인 ☐ 변경 미승인	검 토 자	(인)

[제6-2호서식]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사업포기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아이템명			
포기사유			

본인은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가자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